

모빌리티 AI 프론티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한국교통안전공단(TS)는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생태계 육성 및 모빌리티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「모빌리티 AI 프론티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」 참여 중소기업(이하 참여기업)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30일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I

사업개요

- (사업명) 모빌리티 AI 프론티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
- (사업목적) TS 고유사업 관련한 인공지능(AI) 기반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(창업기업)을 발굴·지원하여, 상생협력 산업생태계 조성
- * **AI 모빌리티 스타트업** :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, 모빌리티 관련 제품·서비스 제공하는 창업기업
- (지원내용) AI기반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제품·기술사업화을 위한 ①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, ②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드머니 지원
- (지원규모) 총 5개 창업기업(스타트업), 총 40백만원*

* AI솔루션 공급 및 직접운영비 포함하여 지원 (기업당 '25년 3,000천원 + '26년 5,000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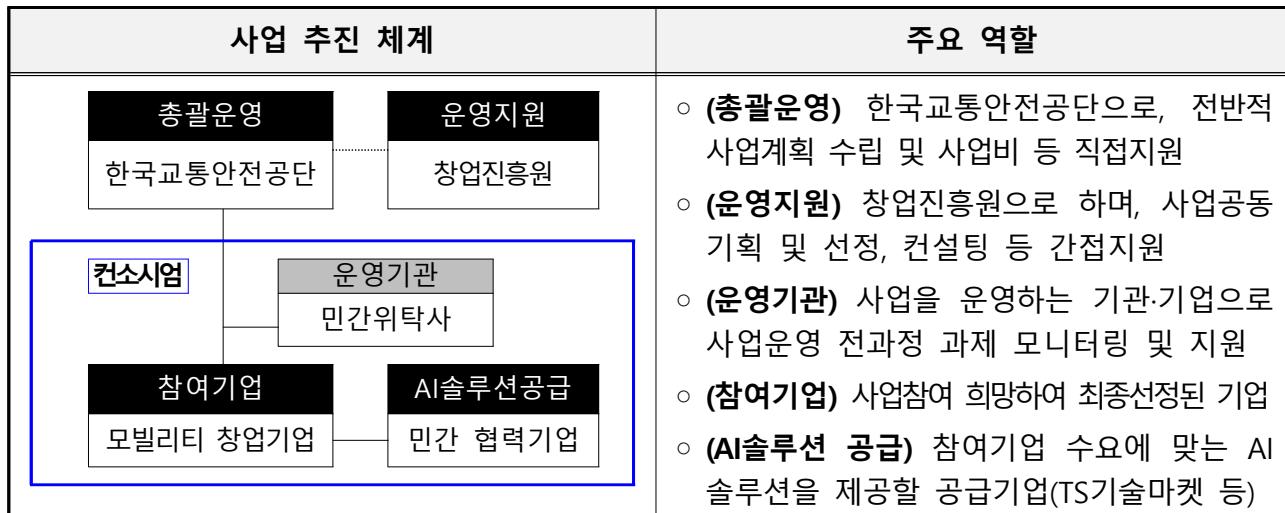
- (지원대상) 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'우수'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기업 또는 기술마켓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모빌리티* 분야 스타트업 (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)

* 교통안전, 자동차검사 및 튜닝, 드론 등 공단 업무관련 모빌리티 전 분야

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

창업패키지(예비·초기·도약),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,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, 초격차 스타트업 1000+(혁신분야, 비대면, 소재·부품·장비), TIPS 프로그램, 창업중심대학, 공공기술 창업사업화, 생애최초 청년창업, 대스타 해결사 프로그램, 글로벌 액셀러레이팅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□ (지원기간) 참여기업 선정시 ~ 2026. 4.

□ (지원내용) AI기반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제품·기술사업화 지원

- 컨설팅·PoC : 관련 전문가 컨설팅* 및 TS협업 사업** 지원

* 각 사업분야별 내·외부 전문가 기술컨설팅, BM모델 발굴 및 글로벌진출 교육 등

** 공단 협업 및 구매 우선검토, 상생협력형 연구개발·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등 우대

- 자금지원 : AI 기술개발 및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시드머니 기업당 총 8,000천원 지원

- (AI솔루션 비용) 인공지능(AI) 솔루션·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

- (스케일업 비용) 인건비, 재료비, 용역비 등 연구개발·사업화 위해 필요한 비용

① TS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활용 지원

- (기술컨설팅) 아이디어만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통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지원
- (경영컨설팅) 대내·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성장전략수립, 재무 및 자금 조달, 신규 BM모델 발굴, 마케팅 등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(실증지원) 공단 보유중인 실증인프라* 통한 제품 검증 및 활용 지원

*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(KAVIC), 김천드론자격센터 등 기업 맞춤형 지원
- (데이터개방) 공공데이터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가공, 결합 등 지원

② 사업화 자금(시드머니) 지원

- (지원항목) 기업당 최대 8,000천원* 내에서 지원되며 AI 솔루션 비용과 기술 및 사업화 스케일업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원

* (1차년도 지원금 총합) 3,000천원[창업 촉진비용 포함] / (2차년도 지원금 총합) 5,000천원

- (AI솔루션 비용) AI 솔루션·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기업이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(TS 구매하여 바우처 형태 제공)

* AI 솔루션 납품비용, 테스트를 위한 용역비, 데이터 구매정제가공비 등 (최소 500천원 이상 계상)

- * 자체 AI 솔루션 보유기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타 솔루션 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 필수

- (스케일업 비용) 사업화 자금으로 AI인력 인건비 및 장기재직 인센티브비용, 재료비, 외주용역비 등 기업 필요에 따른 스케일업 비용 지원

* (지원항목) 인건비, 재료비, 외주용역비, 무형자산 취득비, 기계장치구입비, 광고선전비

* (연차별 지원금액) 1차년도(2,500천원, TS창업촉진비 포함) / 2차년도(최대 5,000천원)

* (불인정항목) 국내·외 여비, 교육훈련비, 회의비, 세금납부, 연구활동비, 자문비 등

* 스케일업 비용은 운영기관에서 지급(증빙검토 후 창업기업→운영기관 세금계산서 등 정산예정)

시드머니 구성 예시

| 구 분 | AI솔루션 비용 | R&D·사업화 1차지원('25.) | R&D·사업화 2차지원('26.) |
|-----|---|---|--|
| 개 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I 활용솔루션 공급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업 초기필요 사업화 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케일업 위한 사업화 비용 |
| 사업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소 500천원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대 2,000천원 이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대 5,000천원 이상 |
| 예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차데이터 구매·시범모델 통한 최적화 솔루션 시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I 전문인력 장기재직 위한 인센티브 제공(내일채움공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발 완료된 시제품 영문 리플렛·홍보물 제작 |

- (신청자격) 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'우수'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기업 또는 기술마켓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모빌리티* 분야 스타트업 (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)

* 교통안전, 자동차검사 및 튜닝, 드론 등 공단 업무관련 모빌리티 전 분야

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

창업패키지(예비·초기·도약),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,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, 초격차 스타트업 1000+(혁신분야, 비대면, 소재·부품·장비), TIPS 프로그램, 창업중심대학, 공공기술 창업사업화, 생애최초 청년창업, 대스타 해결사 프로그램, 글로벌 액셀러레이팅

- (신청요건) 공고일 기준('25.10.24.)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동일법령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인 자

| 구 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|--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체 보유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개인) 사업자등록 기준,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(사업의 개시일)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개인) 사업자등록증 "개업연월일"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"회사성립연월일" 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소지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여부 결정 ④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대해 해당되고 '신청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⑤ 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'우수'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체로 지원하거나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를 보유하여 함 |
| 신청제외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반유통주점업, 무도유통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모집공고일 기준 휴·폐업·파산·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|

V

사업신청

(신청기간) 2025. 10. 30.(목) 11:00 ~ 11. 7.(금), 18:00까지

(신청방법) 담당자 이메일 통한 온라인 신청(stable@kotsa.or.kr)

- 참여신청서, 증빙자료 등 전체자료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공단 제출필수

* 참여기업은 반드시 제출이후 공단으로부터 접수알림 메일을 회신받아야 함

- 문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ESG경영처(054-459-71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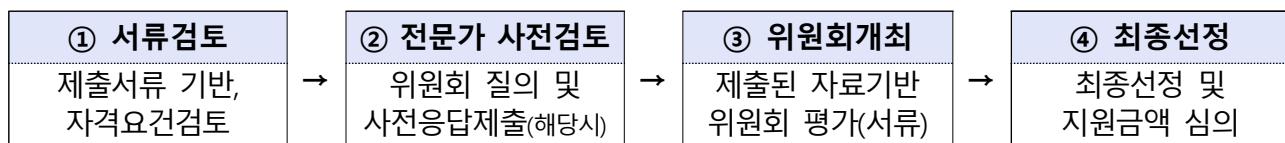
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확인서류

| 연번 | 제출서류 목록 | |
|----|----------|---|
| 1 | 필수 |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|
| 2 | 필수 | 기업·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|
| 3 | 필수 | 사업자등록증 |
| 4 | 필수 | 국세 완납증명서 (유효기간 확인 必) |
| 5 | 필수 | 지방세 완납증명서 (유효기간 확인 必) |
| 6 | 선택 | 기업소개서(회사 및 제품소개 이미지 포함) - 별도 양식 제한 없음, 분량제한 10p 이내 |
| 7 | 선택(해당 시) | 가감점 등 관련 증빙서류 및 기업필요서류 (평가표 참조) |
| 8 | 선정완료시 | 중소기업 확인서, 창업기업 확인서, 등 관련 추가서류 제출필수 |

VI

평가 및 선정

(평가절차) 전문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기업 선정



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탈락처리 예정

* 사업자 확인, 진위여부 등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은 필요시 개별안내

** 전문가 사전검토 과정에서 기업별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 별도답변 제출 요청(~2일 내)

- (평가기준) 창업사업화 및 TS연계 모빌리티 AI역량, 가감점 지표로 평가

| 사업화 평가기준 | | 모빌리티 AI 협업 | | 가감점 (최대 ±3점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|
| 60점 | 1. 문제인식(Problem) | 40점 | 5. 모빌리티 AI 역량 | 최근 3년간 TS 동반성장 사업참여기업 (성과공유제, 동반진출지원 협신파트너십) 행정사항 준수 |
| | 2. 실현가능성(Solution) | | - 사업의 모빌리티 AI 관련성 - 모빌리티 및 AI 등에서 전문성, 기술역량 등 평가 | |
| | 3. 성장전략(Scale-Up) | | 6. TS 전문역량 연계 활용성 | |
| | 4. 기업구성(Team) | | - TS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평가 | |

VII

유의사항 및 의무

- 참여기업 선정 시 기술보호울타리, 기술임치사업 등 참여 필수
(자부담금 전액 공단부담 예정)

- **기술보호울타리**: 기술탈취 사전예방 현장컨설팅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부사업(현장자문 확인서 발행 및 제출 필수)
- **기술임치제도**: 기업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기술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보관하는 제도(과제 완료시 기술임치증 발행 및 제출 필수)

- 본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본 사업 선정시,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협조 동의 및 결과발표 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해 반드
- 창업진흥원 지원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, 성공 판정(우수 이상)을 받은 동일 사업체로 사업에 신청 해야 함

*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성공판정(우수 이상) 여부 검증 예정

붙임 1. 지원제외 대상업종

1.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
2.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
3. 선정평가표

[붙임 1] 지원제외 대상업종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| 연번 | 대상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일반유통주점업 | 56211 |
| 2 | 무도유통주점업 | 56212 |
| 3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9 |
| 4 |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
- 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,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(기업)

| NO | 대상업종 |
|----|---|
| 1 |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|
| 2 |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 |
| 3 | 가상화폐 거래소업 |
| 4 | 가상화폐 개발업 |
| 5 |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|
| 6 | 가상자산 취급업 |
| 7 | 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 |
| 8 | 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|

* 단, 가상자산 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가능

** 기준 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

[붙임 2]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

| 비목 | 비목정의 | 가능회차 |
|-------------|--|-------|
| 인건비 | ▶ 창업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 지급 불가) | 1·2회차 |
| 재료비 | ▶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| 1·2회차 |
| 외주용역비 | ▶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| 1·2회차 |
| 무형자산 취득비 | ▶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관련 비용 | 1·2회차 |
| 기계장치 구입비 | ▶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| 1·2회차 |
| 광고선전비 | ▶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 2회차 |

[붙임 3] 참여 중소기업 모집평가표

(사전검토)

| 구분 | 검토사항 | 해당유무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지원 자격 여부 | 1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(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인완료) | |
| | 2. TS와 특수관계자(법인세법 시행령 제2의2)가 아닌 기업 | |
| | 3. 휴·폐업중인 기업 | |
| | 4.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| |
| | 5. 유통·향락업, 숙박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| |
| | 6. 세금(국세 및 지방세)을 체납 중인 기업 | |
| | 7.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| |
| | 8.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 | |
| | 9. '22~'24년 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'우수'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기업 또는 기술마켓 인증기업 | |
| | 10. 공단 사업과 관련한 모빌리티 관련 기업 | |

(선정평가표)

- 각 정성평가는 전문가 위원회 5단계 평가로 이루어지며,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을 통해 선정예정

| 구분 (배점) | 평가지표 | 점수배분 | 기준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화 평가 (60) | 문제인식 (Problem) | 15 | 사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| |
| | 실현가능성 (Solution) | | 사업아이템의 실현(개선/개발) 및 구체화 방안 | |
| | 성장전략 (Scale-up) | 20 | 10 | 사업아이템 시장 진입 등 사업화 전략 |
| | | | 10 | 사업추진일정 및 지원금 운용 계획 |
| 모빌리티 AI 협업 (40) | 기업구성 (Team) | 10 |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| |
| | | | 기부금 및 보유역량 | |
| | 모빌리티 AI역량 | 25 | 15 | 제품·서비스 등의 모빌리티 AI 관련성 |
| | | | 10 | AI 모빌리티 기업 전문성 |
| 가감점 (±3) | TS 전문역량 연계 활용성 | 15 | TS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통한 시너지창출 | |
| | | | TS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통한 시너지창출 | |
| | | | TS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통한 시너지창출 | |
| | TS 동반성장사업 참여기업 (최근 3년) | 3 | 1 | TS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|
| | 행정사항 미준수 | -3 | 1 | 중소벤처기업부 TS동반진출사업 참여기업 |
| | | | 1 | 혁신파트너십 참여기업 |
| | | | -2 | 사업계획서 등 분량초과 (페이지당) |
| | | | -1 | 위원회 질의 미응답시 |